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☐ 제안 이유

공로연수 등을 신청한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☐ 주요 골자

○ 본청의 정원 8명을 감축 : 3급 1명, 4급 7명

☐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

☐ 따로 붙임

1.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 1부.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참고 자료 (근거 법령 내용) 1부. 끝.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본청 “945”을 “937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